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홍보 금지 등〉

■ 김성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5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4
3. 회 부 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도로연수의 경우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했던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생략)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누구든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0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u>	6. <u>제1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u> ----- <u>하거나 알선한</u> -----

현행법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이나 알선행위가 기업화·조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불법연수의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연수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해 수강생과 도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이 갖춰야 하는 교육용 자동차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5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9. 교육용 자동차(전문학원의 기능검정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가.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공통기준

- 1) 교육생이 교육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
- 2)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추** 것

다만, 개정안은 제116조에 제3항을 신설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과 알선행위의 홍보를 금지하면서도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을 뿐이므로¹⁾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불법운전교육에 대해 온라인 홍보행위만 금지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불법운전교육 근절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고, 최근 동 범죄의 양상이 조직화되고 있으므로 개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영업으로 하는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의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 ⑤ (생략)

문 의 처
02)6788-5345